

의안번호	제122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5. 6. 24. (제240회)	

**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 
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**

제출자	복지문화국장 김창현
제출연월일	2015. 6. .

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안 제3조의2제2항제3호 위촉직 위원에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을 추가한다.

## 4. 검토의견

가. 구의회 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	부서의견
제3조의2(기금운용심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	제3조의2(기금운용심의회) ① (개정안과 같음)	수정안 동의
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1.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. 2.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, 재무과장으로 하며,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.	② (개정안과 같음)  1. (개정안과 같음)  2. (개정안과 같음)	
3. 위촉직위원은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촉직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3. 위촉직위원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을 포함한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촉직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
③ (현행과 같음)	③ (개정안과 같음)	
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자원재활용팀장이 된다.	④ (개정안과 같음)	
⑤ ~ ⑦ (현행과 같음)	⑤ ~ ⑦ (개정안과 같음)	
⑧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	⑧ (개정안과 같음)	
제4조(기금·회계직 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	제4조(기금·회계직 공무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	
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「지방재정법」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.	② (개정안과 같음)	

## 나. 검토의견

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강남구의회 수정사항이 기금운용에 있어 공정성을 기함에 있어 구의회에서 의결 이송되어온 수정안대로 공포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

제26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)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(還付)하고, 재의(再議)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항 중 “5명”을 “6명”으로, “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,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, 위원은 재무과장, 사회복지과장,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강남지부장으로 임명·위촉하여 운영한다”를 “위원으로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.
2.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, 재무과장으로 하며,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.
3.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을 포함한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의2제4항 중 “청소행정팀장”을 “자원재활용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

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신 · 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</u> <u>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</u> 제3조의2(기금운용심의회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<u>복지문화국장</u>, 부위원장은 <u>청소행정과장</u>이 되며, 위원은 <u>재무과장, 사회복지과장,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강남지부장으로</u> 임명·위촉하여 운영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</u> <u>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</u> 제3조의2(기금운용심의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6명</u> ----- 위원으로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.</p> <p>2.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, 재무과장으로 하며,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.</p> <p>3.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을 포함한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</p>

<p>③ (생 략)</p> <p>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이 된다.</p> <p>⑤ ~ ⑦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 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자원재활용팀장</u>----- -.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</p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<p>복지문화국 청소행정과</p>	
<p>연 락 처</p>	<p>(02) 3423 - 5984</p>